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826 |
|----------|-------|

발의연월일 : 2023. 2. 3.

발의자 : 김영선 · 이명수 · 임병현
김상훈 · 홍석준 · 이채익
조명희 · 하영제 · 조은희
박대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기획재정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을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2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20일”을 각각 “3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 단 중 “받으면”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행정기본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허가 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허가 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o)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8조(<u>이의신청</u>) ① 이 법에 <u>따</u>를 <u>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u>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 <p>제18조(<u>이의신청 특례</u>) ① --- <u>따</u>를 <u>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u>는 ----- ----- ---.</p> <p>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p>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
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
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
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
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
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
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 설>

-----.

③ -----
----- 받으
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
간을 말한다) 이내에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
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
조에 따른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⑤ (생략) <u><신 설></u> |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
|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 ⑩ (생략) <u><신 설></u> <u>⑪ ~ ⑯ (생략)</u> |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⑪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u>⑫ ~ ⑯ (현행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u> |